

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: 2022년 07월 29일

개정: 2024년 08월 12일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주식회사 안랩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구성

제2조 (구성)

-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감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.

제3조 (위원장)

-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해임 및 총원)

감사위원의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주주총회는 해임,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원한다.

제3장 운영

제5조 (위원회)

위원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 (위원회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의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권한 및 의무

제8조 (권한)

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업무감사권
2.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
3. 이사 보고의 수령권
4.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
5.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
6. 각종 소의 대표권
7.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
8. 전문가의 조력요청권
9.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, 해임에 대한 권한
10. 기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

제9조 (의무)

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선관주의 의무
2.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
3.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4. 감사록 작성의 의무
5. 감사보고서 제출의 의무

제5장 기 타

제10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1조 (통지의무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2조 (감사의 유형)

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, 업무감사, 재무감사, 준법감사, 정보기술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 (감사의 실시방법)

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, 종합감사, 특별감사로 구분한다.

제14조 (감사의 실시)

-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

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. 위원회는 회계 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③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 - 1. 거래기록의 신뢰성
 - 2.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
 - 3.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
 - 4.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
 - 5. 회계방침의 계속성
 - 6.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
- ④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결의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5조 (중요 회의에의 출석)

-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,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.

제16조 (문서 등의 열람)

-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.
- ②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,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,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.

제17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18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9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20조 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운영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 (2022.07.29)

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08.12)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